

현대 천황제의 리저널리즘*

정창석

동덕여자대학교 일본어전공 부교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미국의 점령통치(1948-1952)를 통해 부여된 헌법에 의해 상징천황제로 소위 ‘국체(國體)로서의 천황제 유지를 달성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의 전후 50년은 상징천황제 하에서 시민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상징천황제를 조건으로 미국은 천황을 전쟁범죄자 소추로부터 면제하였으며, 천황의 정치권력을 박탈하고 국민주권과 일본의 전쟁포기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외면상 근대 일본의 절대주의 천황제와의 단절을 규정하였으나, 일본인의 잠재 의식화된 국민의식 속에는 여전히 천황제 신화와 신성성이 자리 잡고 있어 천황의 권위에 대한 인식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쇼와천황 히로히토의 와병(1988)을 계기로 일어난 전국적인 자숙(自肅)과 완쾌기원(完快祈願)은 자율(自律)을 가장한 타율적 강제행위들이 천황 신앙의 주술적 속박으로 일본인에게 여전히 뿌리 깊이 남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전후 상징천황제 성립의 과정과 일본 국민과 천황과의 관련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소위 평화헌법에 의한 천황제의 유지가 절대주의 천황제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의 연장선상에서 내재화되어 갔음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대의 상징천황제하의 일본은, 천황제 신화를 내세워 민족적 우월성을 주장했던 근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아시아 혹은 세계 속의 일본이 아니라 일본 속의 일본으로 특수화하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특이한 리저널리즘의 지역인 것이다.

◆ 주제어: 상징천황제, 국민통합, 평화헌법, 전쟁책임, 국사행위, 천황제 신화, 극동국제군사재판, 망언

1. 머리말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의 패망 이후 일본의 천황제는 소위 상징천황제로 변모했다. 미국의 군사점령과 더불어 미·소 냉전의 본격화와 사회주의 중국의 탄생,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본을 ‘아시아의 방어선’으로 자리매김한 미국의 세계전략 및 극동정책과 맞물려 일본이 필사적으로 지키려 한 소위 ‘국체(國體)의 호지(護持)’가 이루어지고 천황은 소위 ‘인간선언’을 통해 신격을 강등당해 ‘평화헌법’에 의한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천황은 미국에 의해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전범으로서의 기소가 면제되고, 이러한 면죄부의 부여는 일본인 자신의 손에 의한 천황의 전쟁책임 추궁을 불가능하게 하였

* 본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BM2059).

으며, 이윽고 전 국민적인 규모로 전쟁책임 망각증을 일반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의 천황에 대한 면죄부의 부여와 일본인의 천황에 대한 가치동일시 현상은 오히려 일본인에게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을 확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군사점령을 마감하게 되고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천황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 영국식 입헌군주로서 소위 ‘평화헌법’이 규정한 ‘국가행위’에 한해 공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천황을 중심으로 천황주의 사상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 크고 작은 왕실의 행사가 국민적 행사 내지는 국민적 축제로 변질되는 일본인의 몰지각적 천황숭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1959년의 아키히토(明仁) 왕세자의 결혼은 국민적 축제가 되어 전후 복구의 완전 종결을 의미하고 있으며, 1989년 1월 쇼와(昭和) 천황의 죽음은 전후 총결산이라는 시대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1989년 11월의 헤세이(平成) 천황의 즉위는 일본인 스스로에게는 근대의 전쟁의 악몽으로부터 해방되어 국제화·정보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화려한 출발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이면에서 1988년 쇼와(昭和)천황의 병상을 둘러싸고 전 국민적인 규모로 눈사태처럼 번져갔던 ‘자숙(自肅)’의 비공식적 공식행위들은 일본인의 내면에서 천황제 주술(呪術)의 속박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결국 상징천황제하의 천황은 일본인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시간의 지배방식으로(元號), 공사(公私) 혼합의 종교적 방식으로(神社), 국민통합의 상징적 방법으로(君が代, 日の丸), 국가기관의 정통성과 정당성의 부여방식으로(國事行爲), 국가원수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징천황제하의 전후 일본은 일본인 스스로에 의한 천황의 전쟁책임 규명을 회피함으로써 천황의 지배자로서의 신성성을 박탈하지 못했고, 이 가공의 신성성에 편승하여 전쟁책임과 전후책임을 피해의식으로 전환시키는 전 국민적 전향(轉向)을 하여 오히려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평화와 안정을 외치고 누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며 보낸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인 특유의 기정사실에 대한 의식의 화석화현상은 제국주의시대의 천황에 대한 무한책임성을(丸山眞男, 1967: 31-33)¹⁾ 전후(戰後)에 이르러 침략을 당했던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에 대한 무책임성으로 치환한 결과이다. 또한 천황의 상징성으로 위장한 신성성을 잠재 의식화하여 표면에서는 항상 주어진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표명하는 현대성을 보이면서도 언제든 전근대적 천황의 허위의 신성성에 편승하여

1) 마루야마(丸山眞男)는 도쿄제국대학 교수였던 E. Ledere가 경험한 1923년의 섭정(히로히토) 습격사건(虎の門事件) 때의 황당무계한 연대책임의 양상과 관동대지진 때 천황사진(御眞影)을 구하기 위해 불속에 뛰어들다 죽은 학교장들의 예를 들어 천황에 대한 ‘신민(臣民)’의 무한책임성을 설명하고 있다.

자민족의 우월성을 선전하며 한번 실패한 내셔널리즘을 또 다시 노골화할 수 있는 특이한 리저널리즘²⁾의 지역인 것이다. 전근대성과 현대성의 공존, 이것이 상징천황제의 비밀이다. 이것의 정체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상징천황제의 탄생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군사점령의 근거는 1945년 7월, 포츠담선언에 의해 미국이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포츠담선언에서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완전 제거, 연합국이 지정하는 일본 영토에 대한 군사점령, 일본 영토의 한정, 일본군의 완전 무장해제, 전쟁범죄자의 처벌, 평화적 생산 활동의 재건, 일본 국민의 자유의지에 의한 평화적 정부의 수립과 점령군의 철수,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불응 시 신속하고도 완전한 괴멸이 있을 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外務省編, 1988: 626-627). 군사지배를 실시함에 있어 미국은 일본의 민주화가 천황 문제의 해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민주화를 이룩한 후 천황제를 존속시켜 이를 점령통치에 이용한다는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일본 점령 정책의 기본 원칙은 당시의 미국의 국민적 정서와 배치되는 것이었다. 1945년 여름 당시의 갤럽조사에 의하면 전후 천황 문제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처형’을 주장하는 응답이 33%로 가장 높았고, ‘무죄’라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竹前榮治, 1980: 94). 또한 같은 연합국 내에서도 소련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천황의 전쟁범죄자 기소와 천황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1945년 9월 22일의 ‘항복 후에 있어서 미국의 초기 대일(對日) 방침’에서 ‘일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意思)에 의해 지지받지 못하는 어떠한 정치형태도 강요하지 않는다.’(辻清明編, 1966: 19-20)는 원칙을 표명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지침이 없더라도 태평양전쟁 기간 중 일본 국민의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과 충성심을 직접 체험한 연합군 총사령부(GHQ)로서는 점령 초기부터 천황제 폐지로 인해 초래될 일본 국민의 엄청난 혼란을 염려하고 있었다. 또한 점령 정책의 수행에 있어 천황제를 민주적으로 개편하여 유지시키는 것이 일본 국민의 지지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천황제의 존폐 문제는 일본 정부에 있어서도 당면한 초미의 중대사였다. 1945년 7월의 포츠담선언에 임해서도 소위 ‘국체(國體)의 호지(護持)’가 보장되지

2) 일반적으로 세계통합주의(globalism)와 대비되는 의미로 지역협력주의(regionalism)가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일본의 역사성으로 인한 갈등관계의 리저널리즘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항복’³⁾을 지연시켰던 일본 정부로서는 천황제 유지야말로 지상과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부여받지 못했다. 1945년 9월 6일 미국의 ‘기본지령’과 함께 하달된 ‘연합군 최고사령관 권한에 관한 시달’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천황 및 일본 정부의 국가통치 권한은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종속한다. …… 연합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계약적 기초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항복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귀관의 권한은 최고의 것이므로 귀관은 그 범위에 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어떠한 이의(異議) 제기도 받지 않는다.”(辻清明編, 1966: 23)

당시 천황제 유지에 관한 한, 그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었던 일본 정부로서는 맥아더의 ‘나는 천황의 지위에 대하여, 이것을 변경할 생각이 전혀 없다’(主本利男, 1952: 136)는 간접적인 언급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또한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 국민의 천황에 대한 민심의 동향도 주시하고 있었다. 1945년 11월 이세신궁(伊勢神宮)과 명치천황릉(桃山陵)을 순행(巡幸)할 때 히로히토 천황을 수행하기도 고이치(木戶幸一, 內大臣)는 연도에 물려나온 환영객의 엄숙한 태도를 보고, ‘참으로 일본인의 진실한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아 마음을 굳게 먹었다’, 또한 ‘신민(臣民)의 태도야말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참으로 안심이다.’(木戶日記研究会, 1966: 1250)는 안도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의 천황에 대한 충성심에는 패전 직후에도 변함이 없어 미국전략폭격조사단이 1945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시한 일본인에 대한 면접조사에서 천황제 찬성이 95%이고 히로히토 천황의 재위에 대한 찬성이 63%, 퇴위 주장이 불과 3%에 불과했다(竹前榮治, 1980: 94).

이러한 미국 정부의 대일정책과 일본인의 전후 인식에 있어 천황제 유지를 기정사실화하는 기초적 연출로 연합군 총사령부 최고사령관 맥아더와 일본 천황 히로히토(裕仁)의 회견은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945년 9월 27일, 천황은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맥아더와 회견하였다. 이 자리에서의 회담이 이후의 천황 자신은 물론, 일본의 향후 행방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자리는 통역으로 오쿠무라 가즈츠(奥村勝蔵, 外務省 参事官)만이 참석한 단독회견이었다. 이 자리에서의 대화 내용은 맥아더의 회상기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3) 일본정부의 포츠담선언 수락은 1945년 8월 14일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 결정되었다. 이때의 결정을 ‘성단(聖斷)’이라 하여 일본인은 히로히토의 결단력과 평화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성단신화(聖斷神話)’를 창조하게 된다.

“내가 미국제 담배를 내어 밀자 천황은 예의를 지키며 받아 들었다. 그 담배에 불을 붙여 주었을 때, 나는 천황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눈치 챘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천황의 기분을 편안하게 해 주려고 노력했으나, 한편으로 천황이 느끼고 있는 굴욕감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는 나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천황이 전쟁범죄자로 기소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연합국의 일부, 특히 소련과 영국으로부터 천황을 전쟁범죄자에 포함시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나라들이 제출한 최초 전범 목록에는 천황이 맨 첫머리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와 같이 불공정한 행위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했다. 워싱턴이 영국의 주장에 동조하려 할 때에 나는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적어도 백만 명의 장병이 필요하리라고 경고했다. 천황이 전쟁범죄자로 기소되어 교수형에 처해진다면 일본에 군정을 펴지 않으면 안 되며, 틀림없이 전국에서 게릴라전이 시작될 것으로 나는 보고 있었다. 결국 천황의 이름은 리스트에서 제외되었고 이러한 경위를 천황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불안은 근거 없는 것이었다. 천황의 입에서 떨어진 첫마디는 다음과 같은 말이었다. ‘나는 우리 국민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치·군사의 양면에서 행한 모든 결정과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당신이 대표하는 여러 나라의 결정에 맡기기 위해 방문했다.’ 나는 커다란 감동으로 몸이 떨렸다. 죽음을 동반할지도 모를 책임, 그것도 내가 이미 두루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하게 천황에게 돌릴 수 없는 책임을 짊어지려는 이 용기에 가득 찬 태도는 나의 뺨속 까지도 감동시켰다. 나는 그 순간 나의 앞에 있는 천황이 개인의 자격에 있어서도 일본 최고의 신사(紳士)라는 사실을 느꼈던 것이다.”⁴⁾(ダグラス・マッカーサー, 1964: 142)

재임 중 전쟁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쇼와천황이 전쟁책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맥아더의 회고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겠지만, 이것으로 맥아더의 천황에 대한 처분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맥아더가 천황으로부터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때의 사진이 당시의 일본인에게 엄청난 충격과 연합국 특히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위상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⁵⁾ 이 회견 이후에 맥아더의 천황에 대한 답방(答訪)문제에 대해 맥

4) 이 『マッカーサー回想記』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을 의심하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예를 들면 “『マッカーサー回想記』는 자기찬미와 과장 나아가서 사실의 날조, 시간적 사실관계를 거꾸로 배치시키는 모순에 가득 찬 책”이라는 비평(千本秀樹, 1990: 170), 또한 “히로히토(裕仁)와 맥아더의 제1회 회담의 역사적 의의는 히로히토가 전쟁책임을 부인하고 맥아더가 그것을 승인하여 히로히토를 종속시키는 공동의 통치자로 임명한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千本秀樹, 1990: 177).

5) 당시 천황을 수행했던 시종장(侍從長) 후지타 나오노리(藤田尚徳)의 회상에 의하면, “이때의 기념촬영에서 더없이 느긋하게 손을 허리에 대고 있는 맥아더 원수와 예복(禮服)에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폐하를 대조시켜 승리자 맥아더 원수에 대해 폐자인 폐하가 그야말로 압도된 것처럼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

아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평화조약이 조인되어 점령통치가 끝날 때까지 나는 천황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천황을 찾아가면 천황의 지위와 연합국을 대표하는 나의 지위가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원래부터 동등한 것이 아닌 것이다.”(Whitney, 1955: 286).

그러나 실제로는 맥아더와 천황의 회견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맥아더가 해임되어 일본을 떠나기까지(1951년) 천황이 맥아더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11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러한 회견은 맥아더와 천황의 친밀감을 대변함과 동시에 정치적인 교감이 이루어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후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천황에 대한 전쟁범죄자 기소 면제와 함께 천황제의 존속에 이르기까지 맥아더의 점령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다.

천황제 유지의 예비단계로 총사령부와 일본 정부의 합작으로 1946년 1월 1일 천황의 인간선언이 있었다. 이 선언에 의해 외면상으로는 신격(神格)으로부터 인격(人格)으로 강등당한 천황은 이후 달라진 천황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또한 민중에 가까이 다가가는 천황상을 정립하는 방안으로 지방 순행을 빈번히 행하게 된다. 이러한 제스처는 민중 사이에 천황에 대한 친밀감과 황실(皇室)이 항상 민중과 같이 있다는 이미지 조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천황의 모습을 선전하기 위해 마스크가 동원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후 총사령부의 명제는 천황제의 민주화에 놓여 있어 있었다. 민주화된 천황제의 실체는 일본헌법의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권력을 박탈당한 천황제의 구상이 이미 1942년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에 의해 제안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당시 하버드대학의 소장학자였던 라이샤워의 구상은 괴뢰천황제(puppet emperor system)였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우리는 나치와 파시스트 통치에 대한 자연스러운 혐오를 기 대할 수 있고, 그 혐오는 너무도 강력해서 인구의 다수를 연합국과의 협력정책에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전후의 승리를 보장할 손쉬운 방도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려 깊게 계획된 전략을 가지고 사상전(思想戰)에서 승리를 거두어야만 한다. 사상전의 첫걸음은 우리에게 기꺼이 협력할 집단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만일 그 집단이 일본 국민 가운데 소수를 대변한다면, 이는 어떤 의미에서 괴뢰정권(puppet regime)이 될 것이다. 일본은 괴뢰정권 수립전략을 광범위하게 이용해 왔다. 그렇지만 괴뢰가 부적 절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 자신은 우리의 목적에 딱 들어맞는 괴뢰를 창조해 놓았다. 그 괴뢰는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

었다는 것을 덧붙이고 싶다.”(藤田尚徳, 1961: 174)는 발언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때의 일본인의 충격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권위 - 중국에서의 괴뢰들이 언제나 결여하고 있던 - 를 수반할 것이다. 물론 내가 지목하는 괴뢰는 바로 일본 천황이다.”⁶⁾(라이샤워 메모)

라이샤워의 구상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는 별도로 치더라도⁷⁾,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전 국민적 가치의존현상을 보이고 있던 일본인에게 무엇이 효과적인 통치방법인가를 예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및 총사령부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이 괴뢰(puppet)의 개념을 상징(symbol)으로 바꾸어 갔다. 본래 군주제의 성격에 있어 상징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영국에서부터 유래되었다. 1931년 본국과 자치령의 관계를 규정한 웨스트민스터헌장⁸⁾은 영국왕(crown)의 성격을 ‘구성국의 자유로운 결합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천황제 유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한 것은 1946년 1월 3일, 연합군 총사령부에서 나온 소위 맥아더 3원칙을 통해서였다. 일본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맥아더 3원칙은 천황제 존속, 전쟁의 포기, 봉건적 제도의 폐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 중 첫 번째로 천황제의 존속을 명시하고 있다. 즉 천황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며 왕위는 세습된다. 그러나 천황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 행사하며,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芦部信喜, 1993: 24).

1월 13일, 천황주권과 천황의 신격을 규정한 메이지헌법(大日本帝国憲法, 1889년 제정)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마츠모토 위원회(松本烝治, 松本憲法改正委員會)의 헌법초안이 거부되고 총사령부의 헌법초안이 제시되면서 상징천황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을 통보받은 천황은 ‘그 쪽의 의사가 그렇다면 인정해도 좋지 않겠는가. 제1조는 영국처럼 상징으로 바꾸어도 좋지 않겠는가. 백성의 마음을

6) 후지타니 다카시(Takashi Fujitani)가 쓴 「라이샤워의 ‘괴뢰천황제’ 구상」을 실천문학편집위원회(2001: 377)에서 참조.

7) 라이샤워 메모의 발굴자인 후지타니는 “라이샤워는 자서전에서 잠깐 에두르며 이 메모를 언급하긴 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다”면서, 이 메모가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믿을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실천문학편집위원회, 2001: 361).

8) 웨스트민스터헌장(Statute of Westminster): 1931년 영국 본국과 자치령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 자치령은 제1차 세계대전 중 군사협력을 통해 본국에 대한 지위를 향상시켰으므로 양자의 관계는 식민지적 종속관계에서 대등한 입장으로 결합되는 연합체제로 발전시켰다. 1926년 “본국과 자치령은 각기 그 지위가 평등한 자치사회이며, 왕관에 대한 공동의 충성에 의해 자유로이 연합되어 있다”고 정의한 벨푸어(A. J. Balfour) 보고를 채택하고 1930년에는 자치령 총독을 상징적 존재로 결의하였다. 웨스트민스터 헌장은 이들 결정을 이듬해 영국의회가 입법화한 것으로 영국연방의 근본을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국왕(crown)이 ‘구성국의 자유로운 결합의 상징’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치령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연방, 아일랜드, 뉴펀들랜드 등이 본국의회에 대해 완전한 자주적 입법 기능을 획득했다(学園出版社事典編集部, 1994: 6).

내 마음으로 하라, 그것이 조종(祖宗)의 정신이었다.’(松村謙三, 1964: 290)⁹⁾는 반응을 보였다 한다.

이렇게 하여 신헌법은 1946년 11월에 제정되고 1947년 5월에 시행되었다. 맥아더에 의해 제시된 3원칙은 소위 평화헌법(日本國憲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지는 일본 국민의 총의(總意)에 의한다(제1조).’라고 규정하였고, ‘황위(皇位)는 세습하는 것으로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皇室典範)에 의하여 계승된다(2조).’, 또한 ‘천황의 국사(國事)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 전쟁의 포기는 헌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고(副島嘉博編, 1989: 238), 모든 봉건제도의 폐지는 일본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견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

전후 일본의 천황제는 미국에 의하여 유지되었고, 미국이 제시한 소위 평화헌법에 의해 보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국민은 천황제 곧 ‘국체(國體)의 호지(護持)’는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 천황제에 대한 일본인 스스로에 의한 자각적 선택이 말살된 채 ‘입법자’로서의 미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주어진 민주주의에 의해 전후를 맞이했던 것이다.

맥아더는 전후 일본의 ‘건국자’로서 ‘일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앞질러서 가로챈으로써, 루소(Jean-Jacques Rousseau)가 말하는 ‘결과를 원인으로 바꾸어 버리는 입법자’(이환 역, 1999: 57)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 그리고 그는 루소의 ‘입법자’로서의 운명을 가듯 1951년 4월 한국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해임되어 일본을 떠났다. 전후 일본의 초석을 놓은 맥아더는 그 자신이야말로 1853년 내항하여 일본 근대의 출발점을 끊었던 페리(Mathew C. Perry)와 더불어 근대 일본을 ‘상징’하는 미국인이었던 것이다.

III. 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패전국 독일의 재군비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제재는 연합국의 바람과는 반대로 히틀러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경험을 교훈 삼아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은 전쟁범죄자의 처벌과 민주적 제도로 전쟁을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9) 일본에 있어서의 祖宗의 의미는 단순한 조상의 의미가 아니라, 祖는 일본의 건국신화에서 천황의 조상신이라는 天照大神 이하 諸神을 의미하고, 宗은 제1대 천황이라는 神武 이하 역대 천황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의 전쟁 목적은 ‘추축국(樞軸國)에 의한 침략과 잔학행위에 대한 자위(自衛)와 제재(制裁)’를 내걸고 있었다. 이러한 전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연합국은 추축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결정하게 된다. 연합국의 ‘무조건 항복’ 정책은 1943년 1월 카사블랑카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와 영국 수상 처칠과의 합의로 구체화된다(후에 소련의 스탈린도 동의). 이 회담에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는 세계의 평화란 ‘독일·이탈리아·일본에서의 전쟁세력의 완전한 제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독일·이탈리아·일본의 전쟁세력의 배제란 독일·이탈리아·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독일·이탈리아 또는 일본 국민의 박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천명한다(栗屋憲太郎, 1994: 28).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전쟁범죄정책의 특징은 전쟁 도발국의 국민에 대한 책임(국민책임론)의 추궁이 아니라 전쟁지도자에 대한 책임(지도자책임론)을 추궁하여 전쟁세력의 박멸을 시도했다는 점에 있다.

연합국의 전쟁범죄정책은 독일 패망 후의 1945년 7월 포츠담회담과 병행하여 열린 런던회의에서 확정되었다.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의 정부대표가 모인 런던회의는 1945년 8월 8일 ‘유럽 추축국의 주요전쟁범죄자의 소추 및 처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의 일환으로 채택된 ‘국제군사재판소헌장’은 전쟁범죄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종래의 ‘통상적인 전쟁범죄(B급)’ 이외에도 전쟁범죄의 개념을 확대하여 침략전쟁의 계획·준비·개시·수행 등의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는 ‘평화에 대한 전쟁범죄(A급)’와 전쟁 전 혹은 전쟁 중 일반인에 대한 살해·학대 등 비인도적 행위를 처벌하는 ‘인도(人道)에 대한 전쟁범죄(C급)’를 추가하여 국제군사재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栗屋憲太郎, 1994: 26-27).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된 국제군사재판의 기본 목적은 연합국의 ‘정의’와 추축국의 ‘사악(邪惡)함’을 명백히 드러내는 데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성전(聖戰)’이었음을 제시하고, 재판 중 추축국의 정치선전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전쟁 중에 일어난 연합국의 모든 행위는 정당화되며 재판의 법적 근거는 국제법과 형법, 역사적 관례에 어긋남이 없어야 했다. 또한 이것을 위해 채택된 기본적인 헌장들은 연합국의 행위를 구속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바야흐로 미·소 냉전의 서막을 여는 시대적 조건하에서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해와 주도권의 갈등이 선행되어 헌장의 내용 자체가 일류 보편성을 표방하고 있었으면서도 일반적 정의의 구현을 목표로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국제군사재판은 패전국의 ‘과거’에서 ‘침략전쟁’의 증거를 채택하는 것에 매달려 승전국의 ‘과거’에 대한 동등한 심판과 모든 일반국가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 유럽에서는 1945년 11월부터 46년 10월까지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이 열렸고, 극동에서는 1946년 5월부터 48년 11월까지 극동국제군사재판이 열렸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황의 전쟁범죄자로서의 기소 여부였다. 소위 도쿄재판(東京裁判)에서 천황의 전범 소추를 면제한 결정적인 요인은 연합국에 의한 일본 점령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미국의 정책에 있었다. 미국은 일본제국주의의 패전을 전후하여 국내는 물론 연합국과 국제적인 여론이 천황의 전쟁범죄자 지명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통치의 원활화를 위해 천황제를 유지하고 이를 이용한다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미국 정부는 1945년 10월 국무·육군·해군부 조정위원회(SWNCC)에서 천황의 전쟁범죄자 기소 여부는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의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 맥아더에게 증거자료의 수집을 명령했고 또한 자료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지령했다. 그러나 1945년 9월 27일 천황과의 회견에서 이미 점령통치에 있어 천황을 최대한 이용하며, 따라서 천황을 전쟁범죄자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한 맥아더는 이에 대한 결론으로서 1946년 1월 24일 육군 참모총장 아이젠하워(D. Eisenhower)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낸다.

“지령을 받은 이래 천황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비밀리에 가능한 모든 조사를 했다. 과거 10년 간 일본의 정치결정에 천황이 참여했다는 특별하고 명백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가능한 한 완전한 조사에 의해 나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천황의 국사관련행위가 거의 전부 대신과 추밀원 고문관들의 자동적인 책임이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만약 천황을 전쟁범죄자로서 처벌한다면 점령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게 된다. 천황의 기소는 일본인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어 그 과급되는 악영향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다. 천황은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그를 파괴하면 일본국민은 와해될 것이다. 사실 모든 일본인은 천황을 국가원수로서 숭배하고 있고, 옳고 그르고를 별도로 포츠담선언은 천황을 존속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연합국이 천황을 처벌하면 일본인은 이 행위를 사상 최대의 배신이라 받아들여 오랫동안 연합국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품을 것이다. 그 결과 수세기에 걸쳐 상호복수의 연쇄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모든 일본인이 소극적 내지는 절반은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행정활동은 정지되고 지하활동과 게릴라전에 의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근대적·민주적 방법의 도입은 소멸되고 군사적 통제가 불가능했을 때 공산주의 조직 활동이 분열된 민중 사이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 대처하는 점령문제는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여기에는 적어도 백만 명의 군대와 수십만의 행정관리와 진시보급체제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천황을 전범재판에 회부하면 이와 같은 준비가 불가피하다고 권고하는 바이다.”(竹前榮治, 1980: 82-83)

맥아더는 일본에 대한 점령통치와 전후관리의 원활화를 위해 천황제 유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것의 합리화를 위해 맥아더는 소위 평화헌법을 신속히 일본 정부에 부여하였던 것이고, 일본 정부도 천황제 유지를 전제로

하여 부여된 헌법을 수용하였다.

1946년 1월 19일 맥아더가 공포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7조에 있는 ‘국가원수’ 부분이 빠져 있다.

당연한 결과로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일본 제국주의의 모든 전쟁이 ‘국가원수’인 천황의 이름으로 행해졌고 천황의 이름으로 종결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은폐했다. 그리고 그 ‘국가원수’의 자리에 ‘공동모의(共同謀議)’라는 대용품을 설정했다. 대용품으로 선정된 일본 제국주의의 군국주의 파시스트들은 전쟁이 전쟁을 낳는 전쟁습관화에 쩌들어 있었으므로 천황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전쟁 책임에 대해 지루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연극은 계속되어야 했으므로 모든 것은 정해진 통로를 따라 제 갈 길을 갔던 것이다. 이른바 도쿄재판이 뉘른베르크재판에 비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 것은 그 만큼 일본의 전쟁 지도자들의 전쟁범죄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자각이 없었다는 증거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의 나치 지도자들의 자각된 악적(惡的) 당당함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 지도자들은 책임회피와 우둔함과 비겁성으로 가득 찬 ‘왜소성’(丸山真男, 1988: 98)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이것은 그대로 천황에 대한 가치의존과 자기동일시에 의한 단선적 가치관으로 일관하던 일본인이 법정에서 천황이 사라짐으로 인해 초래된 주체적 가치관의 부재현상을 증명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전쟁 수행의 최종점인 천황이 전쟁범죄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 이상 여타의 전범들은 짜여진 각본의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것이다. 천황이 제외된 법정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지도자 어느 누가 자신의 전쟁범죄 책임에 대해 명확한 자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전쟁범죄(A급)’ 대상자 28명이 기소되어 교수형 7명, 중신형 16명 등 도중에 옥사한 2명과 정신이상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국 이외에 극동국제군사재판에 참가한 10개국 중 검찰국에 천황의 기소를 제기한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뿐이었다.¹⁰⁾

극동국제군사재판, 이른 바 도쿄재판(東京裁判)은 결국 천황을 기소 면제한 상태에서 주도적 ‘국가 원수’가 없는 국가주의자들의 ‘공동모의(共同謀議)’라는 각본에 의해 진행되었다. 전쟁범죄자 재판에서 연합국의 전쟁을 ‘성전화(聖戰化)’하려는 의도를 미국이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국제군사재판헌장이 부르짖고 있는 인류 보편성은 연합국 스스로를 부정하는 모순을 낳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두 번에 걸쳐 열렸던 국제군사재판은 미·소 냉전의 개막과 더불어 인류 역사상 승전국에 의해 흔하게 자행되었던 패전국에 대한 복수극의 일반성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10) 오스트레일리아가 제출한 전범목록에는 7번째에 히로히토가 올라 있다(栗屋憲太郎, 1994: 201).

천황이 전쟁범죄자에서 면제된 극동국제군사재판 도중 천황의 소극적인 전쟁 책임 추궁의 방법으로 히로히토의 퇴위(退位)가 논의되었으나¹¹⁾, 이러한 시도도 천황 스스로에 의한 전쟁책임을 몰지각성과 미국의 이해관계 및 일본 국민의 천황에 대한 가치의존성에 의해 실현되지 않았다.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은 미국이 설정한 전쟁범죄에 관한 규정(제11조)¹²⁾을 수락했다. 이 규정에는 도쿄재판과 아시아 각지에서 열렸던 군사재판에서의 판결을 일본 정부가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의 전쟁범죄자 처벌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것이 되었고 또한 일본인의 전쟁범죄자 처벌은 종료된 것이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국제사회 등장은 일본인에게 일본인 스스로에 의한 전쟁책임을 추궁이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일본인의 전쟁책임을 회색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일본인의 전쟁책임을 대한 치매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자신들이 오히려 원폭 피해자라는 가치전도현상을 확산시켰고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를 ‘평화의 성지(聖地)’로 선전하여 일본 국민이야말로 평화를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국민이라는 도착의식을 잠재의식화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가치전도현상은 일본으로 하여금 1978년 10월 17일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에 도조 히데키(東条英機) 이하 7명의 교수형 처형자와 마츠오카 요스케(松岡洋右) 외 미결병사자(未決病死者), 히라누마 기이치로(平沼騏一郎) 외 5명의 옥사자(獄死者) 등 14명의 A급 전범을 ‘제신(祭神)’으로 합사(合祀)하는 역사적의식의 망각을 가능하게 했다.

야스쿠니신사는 이에 대해 ‘A급 전범이라 해도 다른 나라가 결정한 것’으로, ‘제 각각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며, ‘이제까지 A급 전범의 처우는 국민감정으로 인해 연기하고 있었지만 전후 3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메이지(明治)이래의 전통에 비추어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에 모시는 것이 적당하다’(栗屋憲太郎, 1994: 22-23)고 선전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일본의 실정법상 신사(神社)는 종교법인이므로 국가적 행위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인의 전쟁책임을 회색의 실상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11) 쇼와천황의 퇴위 논의는 세 번 있었다. 첫 번째는 1945년 패전 직후, 두 번째는 1948년 도쿄재판 판결 직전, 세 번째는 1951년 강화조약 조인 직전이다(井崎正敏, 2003: 131-133).

1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1조(전쟁범죄): 일본국은 극동국제군사재판 및 일본 국내 외의 다른 연합국 전쟁범죄 법정(法廷)의 재판을 수락하며, 또한 일본국에 구금되어 있는 일본국민에게 이러한 법정에서 부과한 형을 집행한다. 이러한 구금자에 대한 사면, 감형, 가출옥의 권한은 각 사건에 대하여 형을 부과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정부 결정 및 일본국의 권고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극동국제군사재판소가 형을 선고한 사람에게 대한 이 권한은 재판소에 대표자를 보낸 정부의 과반수의 결정 및 일본국의 권고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이석우, 2003: 112).

야스쿠니신사의 춘추제례(春秋の例祭)에는 1951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
의 참배 이래, 이시마시 탄잔(石橋堪山)을 제외하고 역대 수상이 참배했으며,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수상은 전후 총결산을 선언하며 공식참
배를 감행했다. 이후 일본 수상의 공식참배 여부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
는 이유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이 국제적으로 인정한 ‘전쟁범죄’
조항(제11조)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헌법
제20조와 제89조의 조항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인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의식의 부재는 독일인의 그것과 좋은
대조가 되어 더욱 분명해진다. 서독은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 이후에도 나치스
전범에 대한 재판을 자국의 형법에 의해 진행시켜 왔고, 나치스 전범에 대한 시
효를 두 번이나 연기했다. 이윽고 1979년 서독 연방의회는 나치스의 살인 이외
에도 일반인에 대한 살인을 비롯해 모든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에 이른다.¹³⁾

극동국제군사재판, 이것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었
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천황제 유지를 선물로 얻었고, 불완전한 재판에 의해 전
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얻었다. 일본인 스스로에 의한 전쟁범죄자의 처벌과 전
쟁책임의 추궁을 망각한 채 전쟁에 의한 피해자의식만을 증식시키는 전후(戰後)
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IV. 상징성의 조작 - 천황의 국사행위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 소위 평화헌법은 천황을 ‘일본국의 상징이며, 주권을
가지는 국민의 총의(總意)에 의한 국민통합의 상징(象徴)(제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각총리대신과 최고재판소장에 대한 임명권(제6조) 이외에도 제7조
에 10개 항목에 대한 국사행위(國事行爲)를 정하고 있다.¹⁴⁾

이 경우 ‘상징’이 갖는 의미는 ‘추상적·무형적·비감각적인 것을 구체적·유
형적·감각적인 것에 의하여 구상화하는 작용 내지는 매개물을 뜻한다.’(芦部信

13) 전후 독일은 9만 명이 넘는 나치스 관계자들을 재판에 회부하여 7천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望田幸男 外, 1995: 7).

14) 제7조(천황의 국사행위):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국민을 위해 다음의 국
사(國事)에 관한 행위를 한다. ① 헌법개정, 법률, 정령(政令) 및 조약을 공포, ② 국회
의 소집, ③ 중의원(衆議院)의 해산, ④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을 공시(公示), ⑤ 국무대
신(國務大臣)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관리의 임면(任免)과 전권위임장(全權委任狀)
및 대사(大使)와 공사(公使)의 신임장 인증(認證), ⑥ 대사면(大赦免), 특별사면, 감형,
형집행의 면제 및 복권(復權)의 인증, ⑦ 영전(榮典)의 수여, ⑧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
는 그 밖의 외교문서 인증, ⑨ 외국의 대사(大使) 및 공사(公使)의 접수(接受), ⑩ 의식
(儀式)을 행하는 일(副島嘉博編, 1989: 238-239).

喜, 1993: 42)고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있어서 상징(symbol)이 갖는 목적은 일치되지 않는 국가의 여러 기능들을 어떤 장소 혹은 어느 시점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집중하여 통일시키는 작용을 하는 유형·무형의 어떤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기능은 일반적으로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화(國花)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이러한 것들은 구체적 실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표상하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상징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국기(國旗)의 실체 혹은 국가(國歌) 및 국화(國花)의 실체란 다른 유사한 깃발·노래·꽃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징이란 말 자체의 추상성과 마찬가지로 상징하는 대상 자체가 추상적인 의미에 있어서 상징의 실체를 발현할 수가 있다. 상징하는 것 자체가 추상성이기 때문에 상징은 상징 자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기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상징이란 항상 표상하는 주체가 능동적으로 상징을 내세워 상징의 대상을 주장할 때만이 상징의 의미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천황이 일본 국가의 상징이라 규정할 경우에는 천황 스스로의 의사표현에 의한 상징의 의미전달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된다. 일본 국민이 천황을 내세워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 천황의 상징성이 드러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천황 스스로의 능동적인 상징의 전달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살아 있는 인간이 추상적인 상징물이 될 때 이러한 상징의 의미는 결국 일본 국민에 의해 천황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어떤 것이 될 것이다. 헌법의 규정에 의해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천황의 정치적인 권력이 박탈되고 다만 상징적인 표상물이 되어 헌법이 규정한 바의 이른바 국사행위만을 행하는 천황이 상징하는 실체는 결국 명치유신 이전의 천황의 권위로 환원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영국의 ‘군림하나 통치하는 않는(The king reigns but does not govern.)’ 영국의 입헌군주제와 흡사하다 할 수 있다(영국의 경우 상징의 대상을 인격체인 왕(King)으로 하지 않고 사물인 왕관(Crown)으로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국민에게 있어서 명치유신 이래 천황 주권에 입각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살아 있는 신(現人神)으로까지 승격되었던 천황의 존재가 제국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헌법상 근대의 절대주의 천황제와 단절되었다 해도, 천황제 자체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 심리적으로 천황의 권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일본사회에서는 천황제의 연속성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정치적·사회적인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는 일본사회에서 헌법상 절대주의 천황제와의 단절을 명문화하고 국민주권의 시민민주주의를 구현했다 해도, 일본 민족 특유의 맹목적 전통고수주의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제 신화가 잠재 의식화되어 있는 일본 국민에게는 천황제 유지야말로 단절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연속성의 구속이 더욱 고착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의 소위 평화헌법은 천황의 존재를 법률적 규정과 행동양식의 규범화에 의해 ‘상징’의 대상으로 수동화시켜 놓았다. 그러나 일본 국민의 천황에 대한 정신적 관련양상이 항상 수동적·신화적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본인 스스로가 천황 자신의 능동성을 유발시키고 있는 한, 천황은 언제든지 ‘상징’의 허울을 벗고 능동적 권력주체로서 재등장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 국민 스스로가 언제든지 천황의 이름으로 잠재 의식화된 정신적 편향성의 실체를 드러낼 수가 있을 것이다.

상징천황제의 의제(擬制), 과연 일본인은 ‘주권을 가지는 국민’으로서 그들의 ‘총의(總意)’를 모아 천황제에 대한 ‘자유와의 계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일본인에게 ‘상징’으로서의 천황과 ‘주권을 가지는 국민의 총의’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V. 반성과 망언의 리저널리즘

일본제국주의의 패전 후 유행했던 말 중에 ‘일억총참회(一億總懺悔)’가 있다. 패전 처리를 위해 성립된 히가시구니 내각(東久邇內閣)의 히가시구니 나루히코(東久邇稔彦)수상은 ‘국체(國體)의 유지야말로 우리의 신앙’이며, ‘군·관·민 모두의 일억총참회’를 역설했다.¹⁵⁾ 이말의 진정한 뜻은 ‘나라를 지키지 못한 잘못에 대한 천황에의 국민적 사죄’를 의미하고 있었다. 침략전쟁에 대한 ‘참회’가 아니라 천황에 대한 ‘신민(臣民)의 참회’인 것이다.¹⁶⁾ 이에 따라 매스컴에서는 천황의 ‘성단(聖斷)’에 의한 종결이므로 ‘패전(敗戰)’이 아니라 ‘종전(終戰)’으로, ‘점령군(占領軍)’이 아니라 ‘진주군(進駐軍)’으로 표현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인의 천황에 대한 ‘무한책임성’을 세계에 대한 무책임성으로 치환하는 전 국민적 전향의식(轉向意識)인 것이다.

1946년 1월 1일 쇼와(昭和) 천황은 ‘연두(年頭)의 조서(詔書)’, 소위 ‘인간선언(人間宣言)’을 발표했다. 이 ‘인간선언’은 1868년의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이 내세운 ‘오개조(五個條)의 서문(誓文)’의 인용으로부터 시작된다.

15) 히가시구니 나루히코(東久邇稔彦) 수상은 1946년 8월 28일 기자회견 석상에서 ‘군·관·민 일억총참회(一億總懺悔)’를 주장했고, 8월 30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사실에서 ‘일억총참회론’을 펼쳤다.

16) 이것에 대해서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의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 ‘총참회하는 내용은 7천만 일본인과 3천만 조선인인 셈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조선인, 한국인에게 8. 15는 그들의 광복,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그러나 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새기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즉 자기들의 침략전쟁에 조선인을 끌어들이었다는 역사가 일본인의 전후의 반성에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서은혜 역, 1998: 280)

“짐과 너희 국민 사이의 유대는 시종 상호신뢰에 의해 맺어져 단지 신화와 전설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천황을 살아 있는 신(現御神)이라 하고 또한 일본 국민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라 하여 드디어는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지닌다는 가공(架空)의 관념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朝日新聞, 1946/1/1)

이 정치적 연출에는 함축된 의미가 들어 있었다.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의 원점은 메이지천황의 예지에 의한 것이며, 쇼와천황의 신격은 부정되었으나 그 황위(皇位)는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 이하 ‘황조황종(皇祖皇宗)’으로부터 계승되었다는 것을 메이지천황과 자신을 결부시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도 미국으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라 메이지시대의 계승이라는 뜻이며, 천황제 역시 역사상의 당연한 절차로 계승된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외면적 신격을 정치적으로 부정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천황제 자체의 연속성을 주장하여 천황의 혈통성에 감추어져 있는 신성성을 국민과의 유대와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번 실패한 내셔널리즘을 단절로서가 아니라 역사의 망각을 통해 과거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본인의 전후인식에 내재화된다. 일본이 표방하는 외면적인 민주주의의 내면에는 항상 과거의 내셔널리즘을 회복하려는 잠재의식이 공존하고 있는 이중성의 원형이 형성된 것이다.

근대 초기 일본인의 대외인식과 목표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탈아론(脫亞論)’(時事新報, 1885/3/16)이 표상하고 있는 대로의 ‘탈아입구(脫亞入歐)’였다. 동양의 ‘악우(惡友)를 사절하고’, ‘서양의 문명국과 진퇴를 같이 하여’, ‘서양인이 동양을 접하는 방식에 따라 동양을 처분’해야 한다는 이 동양에 대한 멸시의식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의 아시아에 대한 ‘야만관(野蠻觀)’을 고정시켰다. 이것이 아시아 패권주의와 지도자의식으로 구체화되어 아시아 침략주의로 치달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은 ‘한편에 서양인이 있고 다른 편에 동양인이 존재한다. 전자는 지배하고 후자는 지배되어야 한다.’(강홍규 역, 2003: 76)는 서양적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을 그대로 모방했다.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의 형성이었던 것이다. 서양인이 ‘백인(白人)의 부하(負荷, The White Man’s Burden)’(Kipling, 1899: 25)를 내세우듯 일본인은 ‘일본인의 부하(Japanese Burden)’를 자처했다.

“우리 야마토민족(大和民族)은 스스로 참칭(僭稱)하여 황인종(黃人種)의 수장(首長)이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야마토민족의 눈에는 인류는 있지만 인종은 없다. 백인종, 황인종 같은 피상적인 차별은 입에조차 담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원하지 않더라도 세계 2대 인종의 하나인 황인종은 누구라도 우리 야마토민족을 숭배하지 않는 자가 없다. 단지 지나(支那), 조선, 삼(타이) 등 황인종뿐만 아니라 인도, 페르시아, 아리비아, 이집트, 터키 등 무릇 백인종에 가깝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막론하고 각 인종들이 한결같이 야마토민족에 그 희망을 맡기려 하는 표적이 되고 있다.”(徳富蘇峰, 1906: 891)

일본인의 이 ‘부하의식’은 그 정신적 근원을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일본을 통치한다는 ‘국체’ 관념의 맹신에 두고 있었다. 이것은 절대주의 천황제 하에서 ‘야마토민족(大和民族)’ 우월성의 정당화로 연결되었다.

전후 일본인에게 소위 ‘국체’로서의 천황제 유지는 일본인에게 있어서 그 정신적 근간이 그대로 계승되어 일본인의 우월감에 바탕을 둔 근대의식과 민주주의를 표방한 전후의식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했다. 일본인에게 이러한 정신적 기저는 아시아의 가해자로서 침략과 지배로 점철된 근대와의 단절을 통한 역사의식의 인식이 아니라 근대제국주의와의 연결을 통한 역사의식의 인식이라는 내면적 욕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의 이러한 욕구가 대외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1953년 10월 제3차 한·일회담 석상에서의 구보타 간이치(久保田貫一郎)의 발언이다. 소위 ‘구보타망언’으로 알려진 이것은 ‘36년간의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는 한국 사람에게 유익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朝日新聞, 1953/10/22).

식민지시대 일본인의 한국인식은 ‘야만관’이었다. 이 ‘야만관’의 실체가 어떠한가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다음 발언으로 족하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떠한가를 묻는다면 아시아 주 중 하나의 소야만국(小野蠻國)으로 그 문명의 정도는 우리 일본에 까마득히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나라와 무역하여 이(利)가 있을 수 없고 이 나라와 통신하여 익(益)이 있을 리 없다. 그 학문이 취할 만한 것이 없고 그 병력 또한 두려워 할 것이 없으며 그 위에 설사 그 쪽에서 내조(來朝)하여 속국이 된다 해도 기뻐할 만한 것이 못된다.”(郵便報知新聞, 1875/10/7)

제국주의시대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일본인에 의하면 ‘일시동인(一視同仁)’(朝鮮總督府, 1934: 2)이었고, ‘부형적(父兄的) 애정과 도덕적 사명으로 조선을 교육’(北一輝, 1963: 263)시키는 것이었다.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우월감과 시혜의식(施惠意識)이 패전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이 ‘구보타 발언’은 한국 및 아시아에 대한 ‘망언(妄言)’의 원형이 된다. 또한 정신적 원형으로서의 과거에 대한 정당화는 제국주의시대의 ‘영광’으로 돌아가려는 회귀성도 보여준다.

“일본이 메이지 이래 강대한 서구 제국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고 일본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대만을 경영하고 조선을 병합하고 만주에 오족협화(五族協和)의 꿈을 건 것이 일본제국주의라 한다면 그것은 영광의 제국주의이며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는 아시아 해방의 선구자일 것이다.”(椎名悦三郎, 1963: 59)

이 일본제국주의 예찬은 그 뿌리에 천황주의가 자리 잡고 있음은 물론이다.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의 다음 발언(1962)은 이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전후에는 이 팔굉일우(八紘一宇)가 제국주의의 표현이라든가 혹은 침략주의의 딴 이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아무래도 …… 세계일가(世界一家)나 인류애 사상과 연결되는 숭고한 정신이 아닌가 생각한다.”(최혜주 역, 1996: 217)

‘팔굉일우’가 아시아 및 세계 제패의 침략주의의 다른 이름이었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시아에 대한 침략의 자각이 사라지고 시혜의식만 남을 때 일본제국주의의 소위 ‘황도주의(皇道主義)’에 입각한 ‘팔굉일우’에 대한 가치 지향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연장선상의 한 나라인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위한 한·일 합병이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로 체결된 것’(최혜주 역, 1996: 217)이라는 고정관념을 형성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천황주의에 대한 일본인의 자기화(自己化)는 천황의 정치적 혹은 법률적 규정에 구속됨이 없이 내면적 심성에 그 신성성에 대한 가치를 확대시켜 언제든 지 현실적 능동성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1989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수상의 ‘천황은 창공에 빛나는 태양과 같은 존재’이므로 ‘국가는 천황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朝日新聞, 1987/8/30)는 국가와 천황의 합일설도 근대 일본제국주의와 연결되는 일본인의 천황에 대한 귀일사상(歸一思想)인 것이다.

이러한 전후 일본인의 역사인식의 연속성과 마찬가지로 쇼와천황 자신도 적극적인 전쟁책임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 1984년 9월 한국인에 대한 히로히토의 발언은 ‘금세기의 한 시기에 양국 사이에 불행한 과거가 있어 진실로 유감(遺憾)’(朝日新聞, 1984/9/7)이라는 의례적인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불행했던 것은 한국인이었지 가해자인 일본인이 아니었다.’(朝日新聞(宋健鎬), 1984/9/7)는 한국인의 반응은 그대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역사인식의 격차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일본인의 한국지배의 당사자였던 쇼와천황이 한국인에게 남긴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1990년 5월 헤세이 천황(平成天皇) 아키히토(明仁)의 ‘불행한 시기에 귀국의 사람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여 통석(痛惜)의 념(念)을 금할 수 없다’(朝日新聞, 1990/5/24)는 발언도 한국인이 바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통석(痛惜)의 념(念)’이란 ‘신민(臣民)’의 불행에 대한 위로의 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역사성에 대한 정치적 청산은 1965년 한일협정(韓日協定)으로 정리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역사성에 대한 과거사 문제는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쥔(小淵惠三) 수상과의 공동선언에서 ‘일본이 과거 한 시기 한국 국민에 대해 식민지 지배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통절(痛切)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한국일보, 1998/10/8)를 함으로써 매듭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후 일본의 정치적인 역사청산이 의례적인 회피와 현실호도의 습관성이 되어가는 이면에는 항상 근대 일본 제국주의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시도들이 공식적 과거 부정과 짝을 이루는 이중성을 형성하고 있었다.¹⁷⁾ 일본정부의 선언적 과거청산과 이른바 ‘망언’이라 부르는 정치가들의 과거사 정당화는 일본적 이중성으로서의 ‘다테마에(建前)’와 ‘혼네(本音)’를 형성하고 있다. 이 이중성은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정치적으로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하면서도 매년 천황과 결부된 일본적 내셔널리즘의 원천인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에 대한 참배를 공식과 비공식을 혼합하면서 강행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의 역사에 대한 아시아 각국과의 갈등이 강해질수록 일본으로 되돌아가 역사의 회복으로 전환하는 일본적 리저널리즘은 천황주의에 회귀하는 우경화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1989년에 고시되고 초등학교에서 1992년도부터(중학교는 1993년부터) 실시되었던 문부성의 학습지도 요령은, 전후 교육의 점령군 색깔을 벗어 버리고 일본의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보수파의 외침을 반영하여 이전보다 더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전후교육의 총결산’이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학습지도 요령의 주요 내용의 하나는 문화 전통의 존중과 국제이해의 추진으로, ‘국제화’라는 이름 하에 내셔널리즘의 축진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천황에 대한 이해와 경애’가 부활했으며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기른다는 관점에서 ‘국기(國旗)와 국가(國歌)’의 지도가 강화되고 있다.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에서는 입학식과 졸업식으로 특별히 지정, ‘국기를 게양함과 동시에 국가를 제창하도록 지도하기로 한다’로 표현을 강화하여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지도요령 위반으로 처분대상이 된다고 문부성은 설명한다(朝日新聞, 1989/2/11).

이러한 움직임은 역사학계에도 나타나 1997년 후지오카 노부카츠(藤岡信勝)와 니시오 칸지(西尾幹二) 등이 중심이 된 ‘새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 발족되어 ‘자유사관에 입각한 민족주의’를 표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들에 의해 진행된 일본의 전후개혁을 ‘자학사관’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등 과거의 일본 역사를 정당화하는데 몰두하며 좌익적 시각을 철저히 배제

17) 1993년 8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내각 발족 후 일본의 전쟁을 전례가 없을 만큼 명확하게 침략전쟁으로 인정한 호소카와의 발언(1993년 8월)에 대해 나카니시 게이스케(中西啓介) 방위청 장관이 헌법 재검토 발언으로 사임, 그 뒤 1994년 5월 하타 츄토무(羽田孜) 내각 발족 직후 나가노 시게카도(長野茂門) 법무상이 1937년의 난징대학살(南京大虐殺)은 날조라는 발언으로 비난을 받고 발언을 철회하고 사임했다. 1994년 8월에는 발족 직후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내각에서 사쿠라이 신(桜井新) 환경청 장관은 대동아전쟁에 침략 의도는 없었다고 발언하여 각국의 비난을 받고 발언을 취소, 사임했다(서은혜 역, 1998: 57).

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식민지 지배에 있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일반화하여 서양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와 동일시한다.

“식민지 지배가 행해졌던 곳에서는 현지인 사이에서는 쥐 죽은 듯이 아무 말 없으며, 잔혹함과 강압적이고 습관적인 억압의 지배방식에 대한 공포만이 기억에 남아 있다. 서양이 지구 표면의 85%를 지배했던 식민지 경영 실태의 모든 것은 닮아 있었다. 철저한 모욕과 탄압에는 인간은 공포에 질려 어찌할 도리도 없다. 단지 움츠러들 뿐이다. 가혹한 공포정치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인간으로부터 우러나는 용기를 빼앗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통치에 편리하다는 것이다. 페루를 지배한 스페인뿐만이 아니고, 영국은 인도인에게,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인에게, 프랑스는 베트남인에게 같은 짓을 했다. 아니, 우리나라에 원폭까지 떨어뜨린 미국의 방식도 이후 일본인이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태를 보면, 지구상의 그러한 큰 흐름의 최후의 저항에 대한,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한 적의(敵意)의 귀결이었던지도 모른다.”(西尾幹二, 1999: 714-715)

일본인 스스로가 탈출해야 할 ‘황국사관(皇國史觀)’으로 회귀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반성을 서양에서 찾는 ‘탈아입구(脫亞入歐)’의 변형으로 자기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성의 외연적 모순은 아키히토 천황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2001년 12월 아키히토 일본천황은 ‘나 자신과 관련해, 간무(桓武)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武寧王)의 후손이라고 속일본기(續日本紀)에 적혀 있어 한국과의 연(緣)을 느낀다.’(중앙일보, 2001/12/24)는 발언을 했다. 외면적 표상은 한국과의 친밀성 혹은 혈연성을 표현하고 있지만 잠재되어 있는 내면성(本音, 혼네)의 모순은 그대로 식민지시대의 저 유명한 식민지사관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후 일본사회의 이중성은 항상 천황제와 결부되어 정치적으로는 천황의 권력이 박탈되었으면서도 천황제 자체에 대한 터부를 내재화시켰다. 또한 이것은 천황을 둘러싼 일상사들이 신성성의 페티시즘으로 성행하는 일본적 사회현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1988년 히로히토 천황의 와병(臥病)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소위 ‘자숙(自肅)’과 ‘기원(祈願)’의 물결만 보더라도 일본사회가 얼마나 천황제의 연속성에 익숙해져 있으며 천황제의 ‘주술(呪術)에 의한 속박(束縛)’이 얼마나 내재화되어 있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히로히토(裕仁)가 죽지 않고(裕仁의 발병은 1988년 9월 19일 발표되었고, 죽음은 1989년 1월 7일 발표되었다 - 인용자) 사경을 헤매는 시간이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책들은 오랫동안 강구되어야 했다. 천황의 용태에 관한 경건한 일일 보도(日日報道)는 이 섬나라 전역에 걸쳐서 일사불란한 자기규제를 핑장히 거대한 규모로 불러일으키고 또 강박해 갔다. ‘자숙(自肅)’이라는 낱말을 유행어로 부상시켰다. 자숙의 대상이 된 것들 가운데는, 예컨대 TV광고에서 ‘날씨 좋습니

다.'하는 가벼운 인사말을 사라지게 하고, 정당의 모금 캠페인 모임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따위 웃기는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때는 마침 가을이었고, 가을철은 7, 8월의 지겨운 여름을 벗어나 생기를 되찾아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곳곳에서 벌어질 가을축제들이 몽땅 취소되고, 결혼의 달인 11월에 결혼을 올릴 수 없게 된 것이 자못 떨떠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학교 체육대회에서는 달리기를 할 때 출발신호로 총을 쏘지 못하게 하니 맥이 빠졌다.”(박이엽 역, 2002: 35-36)

쇼와천황의 죽음은 전후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천황제라는 질서의 근원에 위로만 향해 세워진 성스러운 존재가 있는 한, 천황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민족과 국민이 동일 관념인 일본인의 정체성(identity)을 확인시켜 주는 천황이 언제까지나 신성성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역사성에 있어 천황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일본인은 천황의 인력(引力)에 의해 항상 외부에 대한 상대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전후 일본은 패전에 의해 아시아에 대한 상대성을 되찾아 아시아를 향한 국민적 객관화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전후 일본은 천황제의 고정성에 의해 전쟁책임의 타의적 처리로 미완의 유물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내재적 결함 때문에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악몽에 시달린 아시아는 결코 일본의 리저널리즘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역사성에 있어서 민족감정에 있어서 일본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아시아를 뒤로 한 채 ‘탈아입구’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며 다시 일본 속으로 환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후 일본에게 있어서 내부적 모순의 외부적 발산이라는 근대 일본의 억압이양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상, 내부적 모순의 내부적 응고라는 형태로 한번 실패한 내셔널리즘을 회복시키려는 일본 속의 일본이라는 리저널리즘으로 서서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세계 제2위의 방위비 지출을 자랑하며 일본은 외면적으로는 성장해 왔다. 그러나 세계로부터 비난받는 일본은 지금 갈등의 시대를 겪고 있는 것이다.

VI. 맺음말

근대 일본의 정치적 특징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명치유신으로 비롯된 절대주의 천황제의 확립이다. 근대 시민혁명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본은 위로부터의 근대화 및 국민통합의 구심체로서의 절대주의 천황제를 강요하는 부국강병으로 일본적 근대국가를 이룩하게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이라는 초근대성과 왕정복고라는 전근대성의 공존을 초래하여 전 국민의 신민화와 천황에 대한 전 국민적 가치의존주의를 낳았다. 전통적으로 사적 개념보다도 공적 개념

이 우세했던 일본에 있어서는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근대적 시민사회의 기반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이데올로기적 요구가 강요되어 국가적 가치, 국민적 이익이 우선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사회의 가치지향의 경직성과 기성사실화는 개인 자유의 존중보다도 멸사봉공의 하강식 가치강요를 낳았던 것이다.

이러한 하향식 가치강요에 길들여져 항상 부여된 가치에 의한 성실성에 익숙한 일본인에게 있어서 패전은 하나의 충격이었고 시련이었으며 또한 모든 것의 붕괴였고 또 하나의 시작이기도 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원자폭탄의 전쟁 무기화의 첫 실험은 일본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공포였으며 가공의 정신적 신화가 무너지는 절망이었고 기존 가치의 허무적 종결이었다. 이것은 일본인에게 물리적 역학관계의 공포였으며 일상적 현실의 피해의식을 심어 주었다. 현실적 피해의식은 전쟁의 가해자로서의 책임의식을 망각시켰고, 일본인으로 하여금 소인국(Lilliput)에서 갑자기 거인국(Brobdingnag)으로 돌아온 걸리버(Gulliver)의 약자의식을 드러내 평화의 교란자가 평화의 실천자로 돌변하는 의식의 치환성을 보여준다. 물리적 역학관계의 압도적 우위에 선 미국으로부터 받은 피폭의 경험은 그대로 미국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어 미국의 점령정책에 고스란히 순응하는 현실주의적 일본인의 원의식(原意識)을 노출시켜 키워 간다.

거인국의 주민인 미국은 실제로 소인국 주민에 불과한 일본인에게 천황의 전범소추를 면제하여 주었으며 일본인이 그토록 노심초사하던 국체(國體)로서의 천황제도 유지시켜 주었다. 미·소 냉전 초기의 세계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진 이러한 미국의 시혜(施惠)는 일본인에게 깊은 수혜의식(受惠意識)을 심어주어 일본의 서구 지향주의는 더욱 심화된다. 일본인은 미국에 의한 피폭을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전환시켜 전쟁책임 자체를 희석시켰다. 또한 천황제의 유지를 기회로 삼아 침략전쟁 당사자로서의 원죄적 책임 추구를 자율적 준엄성에 의하지 않고 타율적 요식행위(극동국제군사재판)로 처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 국민은 일본인 특유의 현상의 기정사실화라는 일본적 현실주의에 안주하며 전후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전후 일본은 미국에 의해 천황의 정치적 권력을 박탈당하고 추상적이고 가공적 의제(擬制)인 상징천황제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천황은 전쟁범죄자 소추를 면제받았다. 이것은 동시에 천황에 대한 전 국민적인 가치의존체계를 형성했던 일본인에게 전쟁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인의 전후인식은 가해자라는 원죄의식이 서서히 사라지고 시대적 상황에 순응했을 뿐이라는 자기변명을 일반화시키며 전쟁의 비참함과 비극성만을 강조하는 피해의식만이 증가했다.

전쟁책임의 타율적 심판(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 이후에도 자율적 전쟁책임 추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 일본은 고도의 정치

적 판단으로 일관했던 불완전한 타율적 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을 기회 삼아 자율적 전쟁책임 추구의 노력을 회피하면서 아시아 각국으로부터의 타율적 전쟁책임 추구의 요구마저 외면과 합리화, 무관심과 망각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후 일본은 근대 일본이 그러했듯이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아시아에 속하지 않는 근대와의 연속성을, 한번 실패한 내셔널리즘의 회복을 통해 다시 이으려는 이중성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 일본적 이중성으로 인한 아시아와의 갈등으로 서구 지향성을 보이면서도 일본 속의 일본으로 서서히 이행해 가는 리저널리즘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 문헌》

- 강홍규 역. 2003.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Edward W. Said 저. 1978.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 박이엽 역. 2002. 『죽어가는 천황의 나라에서』. 창작과 비평사. Norma Field 저. 1991. *In the Realm of a Dying Emperor*. New York. Pantheon Books.
- 서은혜 역. 1998. 『사죄와 망언 사이에서』. 창작과 비평사. 加藤典洋 저. 1997. 『敗戦後論』. 講談社.
- 실천문학편집위원회. 2001. 「라이샤위의 ‘괴뢰천황제’ 구상」. 『실천문학』 61권 봄호. 실천문학사. pp.360-380.
- 이석우. 2003. 『일본의 영토 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인하대학교 출판부.
- 이 환 역. 1999.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Jean-Jacques Rousseau 저. 1964. *Du Contrat social*. Paris: Gallimard.
- 최해주 역. 1996. 『일본 망언의 계보』. 한울. 高崎宗司 저. 1996. 『「妄言」の原形-日本人の朝鮮観』. 水犀社.
- 竹前榮治. 1980. 『占領前後史』. 双柿舎.
- 辻清明編. 1966. 『資料前後二十年史』 1卷(政治). 日本評論社.
- 主本利男. 1952. 『占領秘録』 上卷. 毎日新聞社.
- 木戸日記研究会. 1966. 『木戸幸一日記』 下卷. 東京大学出版会.
- ダグラス・マッカーサー. 1964. 『マッカーサー回想記』 上卷. 津島一夫訳. 朝日新聞社.
- 栗屋憲太郎. 1994. 『東京裁判論』. 大月書店.
- 松村謙三. 1964. 『三代回顧録』. 東洋經濟新報社.
- 井上清. 1975. 『天皇の戦争責任』. 現代評論社.
- _____. 1989. 『天皇・天皇制の歴史』. 明石書店.
- 千本秀樹. 1990. 『天皇制の戦争責任と戦後責任』. 青木書店.
- 芦部信喜. 1993. 『憲法』. 岩波書店.
- 外務省編. 1988.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下卷. 原書房.
- 藤田尚徳. 1961. 『侍従長の回想』. 講談社.

- 丸山真男. 1967. 『日本の思想』. 岩波書店.
 _____. 1988. 「軍国支配者の精神形態」.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来社. pp.88-130.
 井崎正敏. 2003. 『天皇と日本人の課題』. 洋泉社.
 望田幸男 外. 1995. 「戦争責任・戦後責任問題の水域」. 『戦争責任・戦後責任』.
 朝日新聞社朝日選書. pp.3-18.
 徳富蘇峰. 1906. 「黄人の重荷」. 『蘇峰文選』. 草野茂松 編. 民友社. pp.889-895.
 朝鮮総督府. 1934. 『併合の由来と朝鮮の現状』. 朝鮮印刷株式会社.
 北一輝. 1963. 「国家改造案大綱(1919)」. 『北一輝著作集』第2巻. みすず書房. pp.230-368.
 椎名悦三郎. 1963. 『童話と政治』. 東洋政治経済研究所.
 副島嘉博編. 『ジュリスト』. 1989. 933号(5月1-15日) 合併号. 有斐閣.
 西尾幹二. 1999. 『国民の歴史』. 産経新聞社.
 学園出版社事典編纂局. 1994. 『世界大百科事典』23. 学園出版社.

Whitney, Courtney. 1955. *MacArthur: His Rendezvous with History*. New York: Alfred A. Knopf.

Kipling, Rudyard. 1929. "The White Man's Burden: The United States & The Philippine Islands, 1899." *Rudyard Kipling's Verse* Definitive Edition.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pp.25-26.

- 『郵便報知新聞』 1875年10月7日
 『時事新報』 1885年3月16日
 『朝日新聞』 (宋健鎬) 1884年9月7日
 『朝日新聞』 1946年1月1日
 『朝日新聞』 1953年10月22日
 『朝日新聞』 1984年9月7日
 『朝日新聞』 朝刊 1987年8月30日
 『朝日新聞』 1989年2月11日
 『朝日新聞』 1990年5月24日
 『중앙일보』 2001년12월24일
 『한국일보』 1998년10월8일

The Regionalism of the Modern Japanese Emperor System

Chung, Chang-Suk

Associate Professor of Dongduk Women's University

After the Second World War, Japan symbolically maintained the Emperor system through the constitution given by America during the period of American occupation(1945-1952).

Consequently, during the 50 years of postwar period, Japan established citizen's democracy.

America exempted Emperor Hirohito from facing Far East War Crime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Emperor System is made symbolic. America also stripped Hirohito of political power and specified that renunciation of war and democratic sovereignty be made part of the new constitution

Though outwardly absolute ultra-imperialism was gone, there was little change in the Japanese peoples' recognition of the Emperor's authority as portrayed in myths and in the sanctity which people invested the Emperor system.

This was evident when Emperor Hirohito fell ill(1988) and the entire nation went to prayer for the Emperor's complete recovery. The Japanese people clearly still revered the Emperor in the form of a heteronomous compulsion power disguised as autonomous behavior.

This paper focused on the formational process of the Japanese Symbolic Emperor System and its relation with the Japanese and the Emperor. So the maintenance of the Emperor System by what is called the constitution of peace of Japan does not mean the rupture between the Absolute Imperialism and the Symbolic Emperor System, but in fact indicates its continuity by becoming immanent in its extension.

Keywords: *Symbolic Emperor System, National Unification, War Responsibility, Activity of National Mission, Myth of Tenno System,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Thoughtless Words, Regionalism*